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56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구합661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22.
판 결 선 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9,133,250원, 지방교육세 11,681,070원, 농어촌특별세 5,947,2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4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내지 11, 1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4. 3. 설립될 당시부터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redacted]시 F(B)였는데, D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5. 5. 21. 본점 소재지를 [redacted]시 F, 제1호동으로 이전하여 현재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사실상 같고, 그 인적 구성도 중복되어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J은 D의 사내이사 겸 원고의 사내이사였으며, 현재 D의 감사인 K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② 원고가 설립된 이후 2013년 말까지 매입한 기계장치는 450만 원 상당의 공기압축기와 78만 원 상당의 똑딱이 접착기계 등 합계 598만 원 상당일 뿐이고, 2013. 12. 2.경 제작을 의뢰한 기계는 핫팩 제조 설비가 아닌 제작된 핫팩의 자동포장기이다.

③ 원고가 2013. 7. 1. D과 체결한 사업협력 및 OEM계약에는, '갑(D)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를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을(원고)에게 제공하여 본 제품의 생산을 OEM방식으로 위탁하고 갑은 유통을 전적으로 담당한다. 을은 앞으로 개발된 모든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품은 갑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판매할 필요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을은 본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를 표시한다. 상표 표시의 형태 및 방법은 갑이 정한대로 을이 표시한다. 구매계약서는 갑이 발행하는 생산지시서로 대체한다. 본 제품의 납품가격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갑이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을의 공장도 가격으로 별도의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을은 본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 을은 수입검사에 합격한 본 제품의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을의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3. 9. 30.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와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직매입거래란 홈플러스가 재고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협력회사(원고)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위 기본계약서에는 계약목적물이 협력회사 자체 생산이어야 한다거나 일정한 설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없고,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⑤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에 대하여는 상호 거래처 중복 및 생산제품 차별을 이유로 2014. 3. 31. 해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D의 대표이사 G이 2014. 9. 29. 자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서는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코(주)와 원고와의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서에 대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였고, 제품생산시 원고에 대하여 사업상 관여를 일절 하지 않았으며, 제품생산에 필요한 업무협조와 유휴로 남는 기계장치 및 케이스만을 빌려주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⑥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조사한 2014. 4. 4. 당시 건물의 입구 간판에는 원고와 D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무실이 있는 1호동 2층 입구에는 D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무실 안쪽에는 D 관련 액자가 10여 개 걸려 있었으며, 별도로 원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회사의 관리자로 피고의 직원들과 면담한 I의 명함에는 원고 및 D의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공장과 창고 내부에서 원고가 제조하는 핫팩은 확인할 수 없었다.

⑦ 위 회사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은 사무실과 공장, 창고 내부를 전부 확인하였는데, 원고의 기계장치는 없고 D과 OEM계약을 체결하여 D의 기계설비로 D이 작업중이라고 안내받았으며, 피고의 직원들은 실제로 공장과 창고에서 별도로 비어 있는 공간 없이 D의 핫팩이 제조, 포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생산품을 보여달라는 피고의 직원들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측은 제조원이 "㈜D/경기도 [redacted] 시 F", 판매원이 "㈜A/경기도 [redacted]시 F"로 표시된 핫팩만을 제시하였고, 다른 제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직원들은 당시 원고와 D의 직원별 업무현황에 관한 명세서도 요청하였으나 회사관리자와 여러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담당자부재를 이유로 어느 회사의 것도 제출받지 못하였고, 업무현황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⑧ D은 2013. 5. 2.부터 2013. 11. 29.까지 원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입금하였다.

거래일	입금액 (원)	거래일	입금액 (원)
2013. 5. 2.	136,000,000	2013. 7. 9.	7,300,000
2013. 5. 22.	15,000,000	2013. 7. 10.	800,000
2013. 5. 27.	15,000,000	2013. 7. 16.	600,000
2013. 6. 1.	11,000,000	2013. 7. 17.	3,000,000
2013. 6. 5.	3,500,000	2013. 7. 23.	3,000,000
2013. 6. 5.	25,000,000	2013. 7. 25.	500,000
2013. 6. 7.	8,000,000	2013. 7. 30.	17,500,000
2013. 6. 18.	2,500,000	2013. 8. 12.	5,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2013. 6 .19.	2,500,000	2013. 9. 3.	5,000,000
2013. 6. 19.	1,200,000	2013. 9. 17.	33,800,000
2013. 6. 20.	3,600,000	2013. 10. 1.	9,000,000
2013. 6. 25.	900,000	2013. 10. 1.	10,000,000
2013. 6. 26.	2,000,000	2013. 10. 8.	5,000,000
2013. 6. 27.	25,000,000	2013. 10. 24.	3,500,000
2013. 7. 1.	7,000,000	2013. 10. 31.	8,000,000
2013. 7. 2.	1,000,000	2013. 11. 1.	6,300,000
2013. 7. 5.	4,500,000	2013. 11. 4.	3,000,000
2013. 7 .5.	500,000	2013. 11. 5.	3,000,000
2013. 7. 5.	3,000,000	2013. 11. 29.	5,000,000

⑨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사업손실 등으로 2014. 3. 31. 사업협력 및 OEM계약을 해지하여 현재는 현장내부 및 사무실 공간이 빈 상태로 원고만 공장에 존재하고, 원고는 독자적인 제품개발, 단독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2. 핫팩 포장기계장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분기에 핫팩기계 3대 연차적 구입 등 기계설비를 보충하여 2014. 7.경 새로운 제품에 맞는 생산라인이 정상화될 예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물 입구 간판에 원고와 D의 상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입구에는 D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사무실 안에는 D 관련 액자가 걸려 있고 사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평일에 회사관리자와 여러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두 회사의 직원별 업무현황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D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일응 경험칙에 부합하고, 거기에 별도로 비어 있는 공간 없이 공장에서는 D의 기계로 제조원이 D(소재지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었다)으로 표시된 핫팩이 제조되고 있었고, 창고에는 제조원이 D으로 표시된 핫팩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와 다른 제품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 공장과 창고도 전부 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이 핫팩을 제조, 보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원고가 제조원으로 기재된 핫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핫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원고와 D의 사업협력 및 OEM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D이 D의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D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바, D의 위와 같은 사업 수행을 원고의 사업 수행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홈플러스에 납품하기 위하여 OEM계약을 체결하였다면 D이 자신의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은 원고가 D의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고 D의 상표를 기재하여 D에 납품하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홈플러스와의 계약내용에 반하고, 홈플러스와의 계약 내용 중에 원고에게 자체 생산 내지 일정 설비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어 두 계약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점, ⑤ 원고가 D과의 사업협력 및 OEM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D이 사업협력 및 OEM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홈플러스와의 직매입거래 기본계약과는 별도로 D과의 사업협력 및 OEM계약에 따라 핫팩을 제조하여 D에 납품한 것으로 볼 경우 핫팩을 제조하여 D에 납품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D 사이에 이와 같은 대금의 지급 및 정산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OEM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납품대가는 선수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입금내역이 기재된 갑 제18호증(과거내역조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이 2013. 7. 1. 체결되었고 홈플러스와의 직매입거래 기본계약은 2013. 9. 30. 체결되었음에도 D은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이전인 2013. 5. 2.부터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상 매달 말일에 대금을 청구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한달에도 여러번 수시로 입금되었으며 입금내역을 뒷받침할만한 생산지시서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위 사업협력 및 OEM계약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가 D의 생산설비만을 빌려서 원고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원고가 D에게 생산설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D이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만 제출된 점, ⑧ 또한 원고가 단순히 D의 생산설비를 빌려서 홈플러스나 다른 업체에 판매할 핫팩을 제조한 것이라면 생산된 핫팩에 제조원을 D으로 표시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⑨ 원고의 주소지와 D의 현재 주소지가 동일하고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 D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핫팩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D이 제조한 핫팩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판매업(도소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제6쪽 제13행의 "3)"을 "4)"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02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